



원자력법령안 입법예고

● 과학기술처공고 제1997-17호

원자력법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법제업무운영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7년 4월 18일

과학기술처장관

원자력법시행령·시행규칙증 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취지

원자력법증 개정법률이 1996년 12월 30일 공포(법률제5233호)됨에 따라 개정 원자력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국내외 환경변화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원자력사업의 추진에 따른 안전성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원자력법시행령증개정령(안)

- 가.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산하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방안등 구체적 사항을 정함
- 나. 기존 원자력위원회에서 심의하던 하기사항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소관으로 변경함
 -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운영허가
 - 교육용 및 연구용원자로의 건설·운영허가
 - 외국원자력선의 운영허가
 - 사용후 핵연료사업의 지정
- 다. 방사선위해도가 적은 방사성동위원소의 신고 사용자에 대하여 규제 합리화차원에서 정기 검사·안전관리책임자 선임·건강진단의 의무를 생략함.
- 라. 원자력관계시설의 관리구역에 상시출입하면서 방사능오염의 제거, 방사성폐기물의 수거·처리·운반의 역무를 제공하는 자의 등록기

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 마. 방사성동위원소 사용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액을 상향조정하고 폐기업자에 대한 과징금제도를 신설함.
- 바.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 신청 시에 제출하는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의 공람 및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절차에 대한 구체적사항을 정함.

원자력법 시행규칙증개정령(안)

- 가. 부지사용승인신청·건설허가신청시에 첨부하는 방사선환경평가서등에 관한 구체적절차를 정함.
- 나. 방사성동위원소사용허가 신청시 제출하는 방사선안전보고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함
- 다. 방사성동위원소 사용신고의 대상범위를 국제원자력기구가 권고하는 범위로 수정하여 구체적으로 정함.
- 라. 방사성동위원소 허가사용자에 대한 정기검사 주기를 2~3년에서 3~5년으로 완화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7년 5월 7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처장관(참조: 원자력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및 주소
-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과학기술처 원자력안전과에 문의 또는 과학기술처 홈페이지(<http://www.most.go.kr>)의 전자계시판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